

#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규정

제정 2009. 4. 30.

개정 2022. 4.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추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와 <대구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고 한다) 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할 대구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장선거'라 함은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2. '총장입후보자'라 함은 추천위원회에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본교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영광학원 이사회에 추천할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인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12인으로 하며 추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1. 20인 이상의 교원이 소속된 단과대학의 교수회에서 1인을 추천한다.
2. 20인 미만의 교원이 소속된 단과대학과 독립학부는 합하여 1인을 추천한다.
3. 교수회 의장단에서 1인을 추천한다.

**제4조(총장선거의 시기)** 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120일에서 40일 전에 후임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② 총장이 결위된 때에는 결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후임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제5조 (총장 입후보자의 자격)** ①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재직 중인 총장 포함)으로서 총장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지가 투철하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
2. 건전한 교육관과 도덕성을 갖추고 교내외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3.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10년 이상 4년제 정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외 저명인사로서 본교 4개 단과대학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30인 이상이 추천한 사람은 총장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③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총장후보 선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전체교수회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는 평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수회 의장이 공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시행 세칙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선거일 공고)** 총장후보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8조(선거 진행)**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제9조 (선거권자)**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직원의 참여 비율은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총장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및 질의)** 총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선거권자는 소견 발표 후 총장 입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11조(선거 방법 및 총장후보자의 결정)** ① 총장후보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선거권자의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② 총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1순위 총장후보자로, 차순위 득표자를 2순위 총장후보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총장후보자의 순위를 정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다수 득표자로 인정한다.

④ 총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총장후보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 찬성에 미달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2조(총장후보자 공고와 통보)**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후보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선거결과를 공고하고 교수회 의장 및 총장후보자에게 통보한다.

② 교수회 의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총장후보자 선출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3조(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은 3개 이상 단과대학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50인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개정안의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실제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위임장은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8조 제2항의 전체회원을 말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교수회 총회에서 의결한 후 교수회 의장이 공포한 날(2009년 4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교수회 총회에서 의결한 후 교수회 의장이 공포한 날(2012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교수회 총회에서 의결한 후 교수회 의장이 공포한 날(2022년 4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